

GANGJIN 

# *Web Contents*



# 목차

목차	2
여권신규발급	3
일반여권	3
발급대상	3
구비서류	3
일반인	3
만 18세 미만 미성년자	3
현역 및 대체의무 복무중인 자	4
관용·외교관여권	5
관용여권 발급대상	5
외교관여권 발급대상	5
구비서류	5
본인	5
배우자 또는 미혼자녀	5
생활 능력이 없는 부모	6
접수처	6
공문 첨부물 : 비자노트신청서, 관용여권 사본	6



### 일반여권

여권을 처음으로 발급 받는 경우, 유효기간 만료로 신규 발급 받는 경우

### 발급대상

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

### 구비서류

-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병역관계서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(공통사항)
- 신분증은 사진과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신원 정보가 보안요소와 함께 기재되어 있는 유효기간 이내의 국가기관 발행 신분 증명서를 말합니다.

#### 일반인

- 여권발급신청서, 여권용 사진 1매(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. 단, 전자여권이 아닌 경우 2매)
- 신분증
- 병역관계서류
  - 25세~37세 병역미필 남성: 국외여행 허가서
  - 18세~24세 병역 미필 남성: 없음
  - 기타 18세~37세 병역필 또는 면제 대상 남성: 주민등록 초본 또는 병적증명서(단,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)
- ※ 여권 재발급시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은 반드시 지참하시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.(천공 처리 후 돌려드립니다.)

###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

신청인	공통구비서류	추가구비서류
미성년자 본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여권발급신청서(여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)</li> <li>▪ 여권용 사진 1매(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. 단, 전자여권이 아닌 경우 2매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(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, 전자본인서명확인서)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을 한 경우,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구비하여야 하며,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한 경우, 인감증명서를 구비하여야 함</li> </ul>
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방문한 법정대리인 신분증</li> </ul>

법정대리인	<p>이 사건 경우 2매)</p> <p>법정대리인동의서(여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)          ※ 법정대리인동의서 <b>공통구비서류</b> 하향          친권자(부 또는 모) 또는 후견인이 작성</p>	<p>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(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, 전자본인서명확인서)  <b>추가구비서류</b>          ※ 동의서에 대표로 서명(날인)한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 생략</p>
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법정대리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도 작성 필요</li> <li>공동친권인 경우 법정대리인 모두의 인적사항 기입 후 대표자가 서명(날인)</li> <li>단독친권인 경우 단독친권자만이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(날인)</li> </ul>	<p>※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을 한 경우,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구비하여야 하며,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한 경우, 인감증명서를 구비하여야 함</p>
2촌 이내 친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,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 또는 친족관계 확인 가능 서류 (행정정보공동이용망으로 확인 가능 시 제출 생략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위임장</li> <li>방문한 대리인 신분증</li> <li>위임자(법정대리인)의 신분증(사본 가능)</li> <li>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(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, 전자본인서명확인서)              ※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을 한 경우,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구비하여야 하며,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한 경우, 인감증명서를 구비하여야 함</li> </ul>
기타 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법정대리인이 국외 체류하여 인감증명서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체류지 관할 우리공관 영사의 공증을 받은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준비하여 국내 대행기관에 미성년자 본인 또는 미성년자의 2촌 이내 친족이 신청</li> </ul> </li> <li>미성년자가 국외 체류 중인 경우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법정대리인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등 관련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체류지 관할 재외공관에 미성년자 본인 또는 미성년자의 2촌 이내 친족이 신청</li> </ul> </li> <li>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해당 사유별 증빙서류(대행기관 및 외교부 여권과 문의)를 제출하여 단수여권 발급 가능</li> </ul> </li> </ul>	

※ 여권 재발급시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은 반드시 지참하시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.(천공 처리 후 돌려드립니다.)

### 현역 및 대체의무 복무중인 자
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여권발급신청서</li> <li>여권용 사진 1매 (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. 단, 전자여권이 아닌 경우 2매)</li> <li>신분증</li> <li>국외여행허가 - 아래 표 참조              ※ 여권 재발급시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은 반드시 지참하시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.(천공 처리 후 돌려드립니다.)</li> </ul>
--

신청인	제출서류	발행	여권 유효기간
현역복무	국외여행허가서	소속부대허가권자 / 소속기관(장)	10년
6개월 내 전역예정자	전역예정증명서, 군경력증명서 등 전역예정일이 명시된 서류		10년
대체의무복무자(보충역)	국외여행허가서	병무청	5년
6개월 내 대체의무 복무해제예정자	복무확인서 등 의무복무 해제일이 명시된 서류	소속기관(장) / 병무청	10년

직업군인	국외여행허가서	소속부	여행기간
사관생도	국외여행허가서	소속학교(장)	10년
경찰대학생(25세 이상인 경우)	국외여행허가서	병무청	병역미필자와 동일

※ 여자 직업군인 및 38세 이상의 남자 직업군인은 국외여행허가서 제출 불요 현역 및 대체의무 복무중인 자의 국외여행허가 표

## 관용·외교관여권

### ◎ 관용여권 발급대상

- 공무원과 공공기관, 한국은행 및 한국수출입은행의 임원 및 직원으로서 공무로 국외에 여행하는 자와 관계기관이 추천하는 그 배우자, 27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 및 생활능력이 없는 부모
- 공공기관, 한국은행 및 한국수출입은행의 국외주재원과 그 배우자 및 27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
- 정부에서 파견하는 의료요원, 태권도사범 및 재외동포 교육을 위한 교사와 그 배우자 및 27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
- 대한민국 재외공관 업무보조원과 그 배우자 및 27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
- 외교부 소속 공무원 또는 외무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이나 현역군인이 그 가사 보조를 위하여 동반하는 자

### ◎ 외교관여권 발급대상

- 전현직 대통령/국회의장/대법원장/헌법재판소장/국무총리/외교부장관 본인, 그 배우자 및 27세 미만 미혼인 자녀
- 특명전권대사/국제올림픽위원회위원 본인, 그 배우자 및 27세 미만 미혼인 자녀, 생활능력이 없는 부모
- 외교부 소속 공무원 및 그 배우자, 27세 미만 미혼인 자녀, 생활능력이 없는 부모(단, 배우자, 27세 미만 미혼 자녀, 생활능력이 없는 부모는 외교부 소속 공무원이 공무로 국외여행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외교관여권 발급 가능)
- 관용·외교관여권은 공무상 국외여행을 위해 발급되며(개인적 국외여행에는 일반여권 사용), 발급대상자의 가족의 경우에는 공무상 동반시에만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가족에 대한 관용·외교관여권 발급 요청시 관계부처에서는 그 필요성을 상세히 소명하여야 합니다

### ◎ 구비서류

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병역관계서류는 행정전산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

#### 본인

- 여권발급신청서 (또는 간이서식지)
- 공무원증 또는 재직을 증명하는 신분증 (공공기관)
- 관계기관 공문 (공무국외여행허가권자 또는 위임자의 공문)
- 여권용 사진 1매 (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. 단, 전자여권이 아닌 경우 2매)
- 병역관계서류 (25세-37세 병역 미필 남성: 국외여행허가서, 18-24세 병역 미필 남성: 없음, 기타 18세-37세 남성: 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적 증명서, 자주묻는질문-여권발급 참조)

#### 배우자 또는 미혼자녀

- 여권발급신청서 (또는 간이서식지)

(<http://www.gangjin.go.kr>)

- 신분증, 공무원증사본 또는 재직을 증명하는 신분증 사본, 관계기관 공문 (공무국외여행허가권자 또는 위임자의 공문)
- 여권용 사진 1매 (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. 단, 전자여권이 아닌 경우 2매)
-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(미성년자: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, 기타: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)
- 병역관계서류 (25세-37세 병역 미필 남성: 국외여행허가서, 18-24세 병역 미필 남성: 없음, 기타 18세-37세 남성: 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적 증명서, 자주묻는질문-여권발급 참조)

#### 생활 능력이 없는 부모

- 여권발급신청서 (또는 간이서식지)
- 신분증, 공무원증사본 또는 재직을 증명하는 신분증 사본, 여권용 사진1매 (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. 단, 전자여권이 아닌 경우 2매)
-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(미성년자: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, 기타: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)
- 주민등록등본, 부모의 미과세증명서 (국세, 지방세)
- 심신장애자 입증서류 (해당자에 한함)
- 형제자매의 출입국사실증명서 (해당자에 한함)
- 형제자매의 군복무확인서 (해당자에 한함)
- 형제자매의 재학증명서 (해당자에 한함)

- ※ 대리신청이 불가능하오니 직접 방문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- ※ 관용 · 외교관여권 신청시 소지하고 있는 유효한 일반여권은 반납 또는 보관을 하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.

## 접수처

외교관여권 - 외교부 여권과, 관용여권 - 전국 여권사무 대행기관 사증취득을 위한 공한(비자노트) 신청은 공문으로 요망  
외교관, 관용여권을 소지하고 공무로 여행하고자 하는 경우는 사증취득에 필요한 비자노트를 작성하여 교부 할 수 있습니다.

#### 공문 첨부물 : 비자노트신청서, 관용여권 사본

- 비자노트신청서 : [www.passport.go.kr](http://www.passport.go.kr) 민원서식 참조
  - ※ 비자노트신청서 작성 시, 여행목적 및 여행도시명 등 비자노트에 기재될 내용과 일치되도록 유의, 작성
- 비자노트는 비자취득을 위한 공문서로서 여행예정국 대사관에 여권 및 관련서류 등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.
- 미국 및 중국의 경우 초청장이 필요합니다.

GANGJIN

# ***Web Contents***

